

|          |      |   |
|----------|------|---|
| 의안<br>번호 | 1621 | <p>【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<br/>조례안】</p> 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검 토 보 고 서</h1> |
|----------|------|---|

#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0. 4. 29.(금)
- 나. 제출자 :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0. 5. 1.(금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0. 5. 13.(수)

### 2. 제안이유

-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공유물품 대여 사업 운영 근거 마련으로 공유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
-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위원수 확대와 중구 소속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하여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공유물품의 대여기준(대여료, 대여 제한 및 변상) 신설(안 제11조의2)
- 나.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위원 수 확대 : 10명 이내 → 15명 이내 (안 제14조제1항)
- 다. 당연직 위원에 공유경제 관련 업무 담당 국장 추가(안 제14조제3항)
- 라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### 4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 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

#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안 제11조의2에 공유물품 대여기준을 신설하고,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위원수 확대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비를 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로서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 근 거 법 규

## 「지방자치법」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

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(생략)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  -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  - 나. ~ 차.(생략)